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시기 조정 등〉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6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1. 6.
3. 회 부 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궐선거등은 해당 직의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선거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단속사무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경비의 납부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키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보궐선거등에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이 아닌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 2제1항 단서 신설).
- 나.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킴(안 제43조).
- 다.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와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단서 신설).

IV. 검토의견

1.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시기 조정

개정안은 보궐선거 등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시기를 현행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위탁단체가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을 정한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예비후보자) ①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 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의2(예비후보자) ① ----- ----- ----- ----- ----- . 다만, 보궐선거등의 경우 본문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지역농협·지구별수협·지역산림조합 또는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 농업
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
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선거 등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선거일 전 14일) 전 30일부터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전부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통해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 선거운동을 개시하는 기능을 수행함.

한편,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단체로 하여금 선거 위탁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선거일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위탁단체가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음.¹⁾

다만, 보궐선거등은 직위 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선거 준비 기간이 단축되어 실시되므로, 현행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등은 예비후보자등록 시점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을 보장하고 있음.²⁾

1) 「공직선거법」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② 동시조합장선거·동시이사장선거 외의 위탁선거의 선거일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개정안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준용하여 「위탁선거법」에서도 보궐선거등에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사전 준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4조제2항은 “동시조합장선거·동시이사장선거 외의 위탁선거의 선거일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 제24조의2제1항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규정 간의 연결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안의 법 문언을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위원회와 해당 위탁단체가 선거일을 협의하여 정한 날”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진 내부적 시점보다는 협의를 거쳐 선거일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일을 규정하는 것이 예비후보자의 권리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보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등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이 아닌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위탁선거 투표안내문 발송기한 조정

개정안은 위탁선거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현행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에서 “3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9호]	개 정 안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u>2일</u> 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 ----- ----- ----- ----- <u>3일</u> ----- -----.

2025. 8. 14. 이전 법률을 기준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 시 지참물, 투표절차 및 투표참여 권유사항 등이 기재된 투표

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투표안내문과 동봉되는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어,³⁾ 함께 발송되어야 할 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발송기한이 서로 달라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음.

다만, 2015.8.14. 시행된 개정 법률에 의해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 또한 3일로 개정되어, 현행 규정이 보완된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현행 법률 및 개정 전 법률 비교]

위탁선거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9호]	위탁선거법 [시행 2025. 8. 14.] [법률 제21028호]	개 정 안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 ----- ----- ----- -----

- 3) 「위탁선거법」 제2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에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표절차, 그 밖에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표절차, 그 밖에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 ----- ----- ---3일--- ----- -----.
---	---	---

3. 동시조합장·이사장선거 위탁선거 경비 납부기한 조정

개정안은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 관련 계도·홍보 경비와 위반행위 단속·조사 경비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 ----- ----- ----- ----- ----- ----- ----- -----

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1. ~ 4. (생략) ② ~ ⑦ (생략)	-----. <u>다만,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경비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등의 단체가 위탁하는 선거는 의무위탁 선거로서,⁴⁾ 선거 위탁을 위해서는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봄.

한편, 위탁선거의 준비·관리, 계도·홍보, 위반행위의 단속·조사 및 재해보상준비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4) 「위탁선거법」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선거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경비 납부기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일부터 10일)까지, “계도·홍보”, “위반행위의 단속·조사” 및 “재해보상준비금”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 관리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일부터 10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 있어 “계도·홍보”, “위반행위의 단속·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전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종전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임기만료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기부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조사가 개시되는 시점이 종전보다 앞당겨진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 있어 계도·홍보 및 위반행위의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 위탁 단체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조기 단속과 실효적인 조사에 필요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는 의무위탁선거로서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위탁한 것으로 보는데 반해, 위탁으로 인한 일부 선거비용은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바,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납부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계도·홍보 및 예방·단속 활동의 조기 실시가 필요한바, 원활한 단속사무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경비의 납부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